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p>②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해외시장거래”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 이외의 외화증권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이하 “국내장외거래”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3조 제5항으로 이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 등)</p> <p>① ~ ③ (생략)</p> <p>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p> <p>1. (생략)</p> <p>2. 전화·전보·모사전송 <u>기타</u> 이와 유사한 방법</p> <p>3. 컴퓨터 <u>기타</u>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p> <p>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수탁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⑥ (생략)</p>	<p>제2조(매매주문의 수탁 및 집행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전화·전보·모사전송 <u>그 밖의</u> 이와 유사한 방법</p> <p>3. 컴퓨터 <u>그 밖의</u>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p> <p>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의 수탁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자구수정</p>
<p>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 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u>기타</u>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p> <p>-----</p> <p>-----</p> <p>-----</p> <p>-----</p> <p>-----</p> <p>----- <u>그 밖의</u> -----</p> <p>-----</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자구수정</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4.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u>기타</u> 외화증권 매매·취득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p> <p>5. (생략)</p> <p>6. ~ 7.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 ----- <u>그 밖</u> <u>의</u> ----- ----- ----- -----</p> <p>5. (현행과 같음)</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권리행사) (생략)</p> <p>1. ~ 4. (생략)</p> <p>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u>기타</u>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원화 현금에서 우선 받으며, 원화 현금이 부족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을 환전일로 하여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 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고객에게 ()일내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p>	<p>제8조(권리행사)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그</u> <u>밖</u><u>의</u> ----- ----- ----- ----- ----- ----- ----- ----- ----- ----- -----</p>	<p>자구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p> <p>제9조(통지) 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이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배당금, 이자,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u>기타</u>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p>----- ----- -----.</p> <p>제9조(통지) ①회사가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배당금, 이자,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u>그 밖의</u>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사항 <p>② 회사는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권리행사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u> 	<p>권리행사에 필요방법 명확화 (공정위 시정요청)</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수수료) ① 해외시장거래를 하는 고객은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부과금 및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매도에 의한 외화수령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로 외화예금계정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고객은 국내장외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 ④ (생략)</p>	<p>2. <u>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청약대금, 조세 및 부대비용 등 관련대금의 납부절차 및 시기</u></p> <p>3. <u>그 밖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u></p> <p>제11조(수수료) ① -----, <u>그 밖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u></p>	<p>자구수정</p> <p>약관변경 절차 명확화</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㉔ (생 략)</p>	<p>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㉕ (현행과 같음)</p>	